

화순군 열린군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 6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5. 6. 15

다. 상 정 일 자 : 2005. 7. 4

(제13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나. 제안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2004년 1월 29일 전문개정 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4년 3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화순군 열린 군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조례」를 관련법령에 부합하게 전부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보”, “공개”, “청구인”, “집행기관”, “위탁기관”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정보공개 원칙, 집행기관의 의무, 청구인의 의무 규정
(안 제3조 내지 제5조)
- 정보의 공표 등 : 집행기관이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사항 규정 (안 제6조)
- 공개방법 등 : 공개방법, 정보의 전자적 공개,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비용부담 사항 규정(안 제7조 내지 제10조)
-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등 : 심의회 구성, 심의사항,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심의회 회의, 수당, 간사, 대외누설 금지 등에 대한 사항 규정
(안 제11조 내지 제19조)
- 정보공개결정 : 집행기관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안 제20조)
-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을 때에

제3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이 공개결정을 하였을 경우 불복절차 규정(안 제21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용태)

-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 조정과 지금까지 시행하면서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정하는 조례로서 법령 및 행정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 의결”

7. 붙임 : 화순군 열린군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화순군 열린군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화순군 열린군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화순군정보공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이하 “정보”라 한다)에 대한 주민의 공개청구 및 화순군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집행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집행기관이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청구인”이라 함은 집행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집행기관”이라 함은 화순군, 화순군 소속 행정기관, 위탁기관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라 함은 화순군 조례 등에 의하여 사무 및 시설물에 대한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무 및 시설물에 대하여 수탁 운영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집행기관의 의무) ①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주민이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목록을 체계적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집행기관은 정보공개에 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집행기관은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구인의 의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제6조(정보의 공표 등) ①집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화순군의 당해연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계획
2. 화순군의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3. 화순군수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 화순군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음용수의 수질검사 측정 결과
5. 집행기기관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대기, 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측정 결과

6. 화순군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군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7. 집행기관의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결과

②집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화순군의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 계획
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주요 용역사업의 결과에 대한 사항
4. 교량, 터널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5. 교량, 터널 등 시설안전관리 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집행 현황
7. 총공사비 3억원이상의 공사, 5천만원이상의 구매·용역 계약사항
8. 제7호의 공사에 대하여 설계변경(정산 포함)하여 발주금액의 5%가 초과 또는 감소된 경우 그 설계변경 사유 및 이로인해 증액 또는 감액된 공사금액
9. 도급액 3천만원이상의 공사와 1천만원이상의 구매·용역의 수의계약사항
10. 행정심판 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11. 군정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이 주최한 공청회 결과보고서
12. 기타 집행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제1항과 제2항의 정보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 청구되지 아니한 정보로서 주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공개방법) ①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출력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②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청구인이 다수이거나 집행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공개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를 일정한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교부 완료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의 전자적공개) ①전자적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집행기관이 전자적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적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밖에 집행기관이 정하는 정보

제10조(비용부담)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쇄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동법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복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밖에 집행기관의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공개정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1. 집행기관이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행정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의 처리

3. 기타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부군수와 군수가 임명한 실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군 행정에 관한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심의회의위원중 위원장을 제외한 2분의1은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한다.

③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두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된 위원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고 인정할 경우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심의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수 있다.

⑤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수당 등)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화순군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간사 등) ①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②간사는 종합민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일반민원담당이다.

제19조(대외누설 금지) 심의회의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수행상 취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정보공개결정) ①집행기관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은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집행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된 기간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집행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집행기관은 다른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집행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집행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집행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집행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집행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